

채권법 파트 1

채권법 1

- 채권법
- 민법과 채권총칙의 관계
- 채권총칙에서 주요한 주제
- 채무불이행
- 채무불이행에 대비해서 책임재산보전과 관련한 채권자취소권(404조), 채권자대위권(406조)
- 다수 채권자 채무자
- 채권양도/채권인수
- 채권의 소멸

-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
- 채무의 종류를 분류함: ① 급부의무, ② 부수의무, ③ 보호의무

- ② 부수의무: 제374조와 설명의무, 안전배려의무
- 민법 제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.

- 부수의무를 위반한 이행은 불완전이행,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, 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음

-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다는 사실을 숨기고 토지를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지 몰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.

- ③ 보호의무 편입설
- 판례는 보호의무 배제설

- 보호의무란 채권자와 채권자가 일정한 '사회적 접촉(특별결합관계)'에 들어서면 채권관계의 실현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기타 '이행이익'과 무관한 일체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.

- 보호의무 예시: 에어컨 설치를 하던 중 벽에 구멍을 내다가 걸려 있는 액자를 깨뜨린 경우
-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 바나나껍질사안

- 보호의무 편입설에 따르면, 사회적 접촉단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고, 이 때 채무불이행의 특칙으로서 제535조를 유추적용함